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10.

특 허 청
(정보고객정책과)

법제처 심사 前

1. 개정이유

빠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과 관련한 출원료 및 보정료를 조정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출원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특허협력조약(PTA)에 따른 국제조사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범위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보정료 조정

- 1) 전자출원으로서 임시 명세서를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료 조정(안 §2①1·§3①1)
- 2)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과 업무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해 보정료 조정(안 §2①10·§3①8)

나.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현재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감면할 수수료 또한 설정등록료까지 확대(안 §7②1)

다. PCT국제조사·예비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1) 발명의 단일성 요건 미충족시 부과하는 PCT국제조사(예비심사) 추가
수수료를 국제조사료(예비심사료) 수준으로 조정(안 §10①6·6의2)
 - 2)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후 명세서·도면 등의 누락·
정정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 신설(안 §10①6의3)
-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1)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13·§14)
 - 2) 법령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정비(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제7호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OOOO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OOOO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중 “작성하여”를 “작성(「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임시 명세서는 제외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매건 1만4천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합이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중 “작성하여”를 “작성(「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임시 명세서는 제외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매건 1만4천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합이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를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가”로,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을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로,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를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국어 조사의 경우 발명마다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발명마다 120만원

6의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발명마다 45만원

6의3.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5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20만원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사태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하게 감면이 필요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 자, 감면할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종류, 감면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7호다목2) 중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을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기재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제3조제1항제8호나목, 제10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제6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 -----.
1. 특허출원료	1. -----
가.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6천원으로 한다.	가. ----- ----- ----- ----- -----. ----- ----- ----- 작성(「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임시 명세서는 제외한다)하여 -----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10. ----- ----- -----.

가. (생략)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10의2. ~ 14. (생략)

②·③ (생략)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2만5천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매건 1만4천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합이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0의2.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

1. -----

가. -----
-----.

----- 작성(「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

원으로 한다.

나. ~ 라. (생 략)

2. ~ 7의2. (생 략)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
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생 략)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8의2.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조(특허료 · 등록료 ·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생 략)

항에 따른 임시 명세서는
제외한다)하여 -----

-.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7의2. (현행과 같음)

8. -----.

-----.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
원. 다만, 「실용신안법 시
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
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
는 경우에는 매건 1만4천
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
의 합이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
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8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특허료 · 등록료 ·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의 100분의 50

2. ~ 11. (생략)

③ ~ ⑧ (생략)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

-----.

1. -----

-----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
--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

2. ~ 11.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

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

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발명마다 22만5

천원

<신 설>

<신 설>

7. ~ 11.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설>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

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국어 조사의 경

우 발명마다 45만원, 영어 조

사의 경우 발명마다 120만원

6의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

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발명마다 45만원

6의3. 「특허법 시행규칙」 제

106조의14제5항의 규정에 따

른 추가수수료 :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

의 경우 매건 120만원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

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특허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

0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

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특

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

	<u>면할 수 있다.</u> 1.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u>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u> <u>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u> <u>재난지역의 선포</u> 2.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u>」에 <u>따른 비상사태</u> ② <u>제1항에 따라 긴급하게 감면</u> <u>이 필요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되</u> <u>는 자, 감면할 특허료·등록료</u> <u>또는 수수료의 종류, 감면의 방</u> <u>법·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u> <u>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u> <u>한다.</u>
<u>제13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u> <u>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시행에 관</u> <u>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u> <u>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u> <u>여 고시한다.</u>	<u>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u> <u>---- 제13조-----</u> <u>-----</u> <u>-----</u> <u>-----.</u>